21 (제245회 - 제4차 부록)

성주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9년 월 일 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개정이유

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

2. 주요내용

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수행 관련 예산 지원 규정 → 협의회 운영 관련 예산 지원 규정을 삭제함

※「지방재정법」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음

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지방재정법」 등, 별첨 1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 2

2) 입법예고(2019. 10. 22.~2019. 11. 11.) 결과, 이상없음

3) 규제심사 : 개선사항 없음【기획감사실-10166(2019.10.11.)】

4) 성별영향평가 분석 : 개선사항 없음【가족지원과-41713(2019.10.11.)】

5) 비용추계서, 별첨 3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중 “운영 또는 사업”을 “사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첨 1]

관련법령발췌

◈ 지방재정법

제32조의2(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)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(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할 수 없다.

[별첨 2]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협의회에 대한 지원) 군수는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	제10조(협의회에 대한 지원) ---------- 사업 ---------- ----------.